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6 선고 2020가단101179(본소), 2020가단12838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오정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구영관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565,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지급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728,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6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무선드라이기 2종 사출부품 28종을 제작대금 총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금형제작계약 및 제작한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9. 18. 위 금형제작을 피고에게 제작대금 총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탁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5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17. 9. 21. 및 2017. 10. 5. 2차례에 걸쳐 금형 설계 변경을 위해 제작 중단을 요청하였는데, C가 2017. 11.경 제공한 사출부품의 신규 디자인 자료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공급단가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측의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C는 2017. 11. 30.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일방적인 단가 인상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형제작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함을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6285)를 제기하였고, 2019. 10. 23. 위 법원은 C는 원고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금에서 원고가 피고를 통해 지출한 비용을 18,145,100원(금형설계비 870만 원 + 몰드베이스비용 7,348,000원 + 기타 소재 발주비용 2,097,100원)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원고의 순이익을 C와의 금형제작계약

대금과 이 사건 계약 대금의 차액인 20,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C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은 후 2017. 12. 4.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관련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20. 1. 22.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2017. 12. 4.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75,900,000원 및 2017. 12. 4.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973,183원에서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비용 합계 18,145,100원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돈 58,728,08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관리업무비용 12,000,000원(2017. 9.부터 2017. 12.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계약 담당자의 급여 1,800만 원 중 1,200만 원), 금형설계비용 13,100,000원(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870만 원에 재설계 진행비용 440만 원을 합한 금액), 금형소재발주비용 9,445,100원(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코아류 발주비용 2,097,100원에 몰드 베이스 발주 비용 7,348,000원 합한 금액), 계약금액 30%에 해당하는 순이익 69,000,000원 합계 103,545,1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에서 지급한 계약금 75,9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7,64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타 업체와의 계약을 포기하여 발생한 손해 및 임대수익 감소분 등 합계 142,000,000원 상당의 이행이익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반소로 구하지는 않고 있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7. 12. 4. 원 도급인인 C의 해제통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중단한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계약은 관련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가 민법 제673조에 기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7.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인 2017.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10,986원($75,900,000 \times 78/365 \times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구하나, 받은 날로부터 해제일까지 구하는 부분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것이라 보이므로, 민법이 정한 비율로 함이 타당하다.)

나. 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의무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2) 지출비용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18,145,100원(금형설계비 870만 원 + 몰드베이스비용 7,348,000원 + 기타 소재 발주비용 2,097,1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1) 관리업무비용 12,000,000원(2017. 9.부터 2017. 12.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계약 담당자의 급여 1,8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급여가 오로지 이 사건 계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 몰드베이스 발주 비용 7,348,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3) 금형재설계 비용 440만 원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거래명세표 일자는 2017.

10. 24.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C가 두 번째 설계변경을 기초로 한 단가 인상 협의가 그 무렵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없이 위 거래명세표 상의 비용을 그대로 재설계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일을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

가) 살피건대, 을 제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총 제작대금의 30%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리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나) 다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출처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일방 해제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얻었을 계약에 따른 순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하청업체로서 금형제작을 그대로 하수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순이익은 적어도 원고가 C와의 원도급계약을 통해 얻었다고 인정되는 2,000만 원(이 사건 계약대금과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정한다.

다. 양 채권의 상계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원상회복채권 원금 75,900,000원 및 이자 810,986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8,145,100원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20. 2. 7.에 각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상계함을 주장하므로,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원상회복채권에 이자 및 원금의 순서로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는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38,565,886원만이 남게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8,565,8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2. 4.부터의 상사이율 6%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법정채권인데다 본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사채권이라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